

국토교통부 훈령 제1693호

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
(제2조 관련)

1. 국토교통부 공무원 별도정원

총계	31
일반직 계	31
5급	15
6급	14
7급	2

2. 국토교통부 소속기관(책임운영기관 제외) 공무원 별도정원

총계	44
일반직 계	44
6급	8
7급	30
8급	3
9급	3

3. 책임운영기관 공무원 별도정원

가.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별도정원

총계	1
일반직 계	1
연구사	1

나.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별도정원

총계	2
일반직 계	2
6급	1
7급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 를 위한 별도정원) 「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 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<u>2023년</u> <u>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2조(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 를 위한 별도정원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</u> <u>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-</u> ----- ----- -----.</p>